|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용역계약서** | | | | | | | 계약번호  제 호 | |
| **계**  **약**  **자** | 발 주 자 | | 상 호 : 서울대학교병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 | | | |
| 계약상대자 | | 상호 또는 법인명 : ㈜헬스허브 | | | | |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31 아세아빌딩 4층 | | | | | |
| 대 표 자 : 이 병 일 | | | | | |
| 연 락 처 : 070-4821-1136 | | | | | |
| **계**  **약**  **내**  **용** | 건 명 | | EMS HUB Time 녹화기능 개발 | | | | | |
| 계 약 금 액 | | 금 사백오십만 원정 (\4,500,000) | | | | | |
| 결 제 조 건 | | 용역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 | | | | |
| 계 약 기 간 | | 2018년 4월 5일 ~ 2018년 5월 15일 | | | | | |
| 하자보수보증기간 | | 기술 개발 완료 후 ~ 2019년 5월 31일 | | | | | |
| 대금지급일 | | 2018년 5월 15일까지 | | | | | |
| 기 타 사 항 | | 위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붙임의 용역 계약 일반조건을 따름 | | | | | |
| 발주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상대자 ㈜헬스허브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 서비스 용역에 대한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서류  1. 용역 계약 일반조건  2018년 4월 5일 | | | | | | | | |
|  | | | | | | | | |
| **“갑”** | | | | | **“을”** | | | |
| 주 소 : |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 | 주 소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31  아세아빌딩 4층 | | |
| 상 호 : | | 서울대학교병원 | | | 상 호 : | ㈜헬스허브 | | |
| 대표자 : | | 서창석 | | (인) | 대표자 : | 이병일 | | (인) |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헬스허브(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EMS HUB Time 녹화 기능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갑”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시방서 또는 계약서 상에 기재된 세부서비스 내역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서비스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계약서, 서비스 계약 일반조건, 세부서비스 내역, 서비스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갑”은 제1항의 서비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정한 계약사항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서비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3.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통지 등)

1.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2.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기타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및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원천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검수 또는 검사 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문서에 대한 원천 기술은 모두 갑의 소유이며, 을은 제공 받은 기술 및 문서를 업무수행 용도로 제한하며, 이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여 갑의 동의 없이 공개를 금한다.
2. 을은 업무수행 시에 야기될 수 있는 시스템 내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가변을 금하고, 외부노출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검수 또는 검사)

1. “을”은 계약에 의한 완료보고서 및 결과물을 납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과 계약서 및 기타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을”의 업무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 또는 검사를 한다.

제9조(재검수 또는 재검사)

계약 만료 이후에, 제공된 산출물이 “을”의 귀책사유로 지연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결과물이 야기된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 항목에 대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전면 재검토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재검수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1. 대금은 기술 개발 완료 후 계약 금액 전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을” 계약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잔금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은” 제9조에 의해 재검수 또는 재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을”에게 추가 비용 지급은 재검수 또는 재검사가 완료된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지체상금)

“을”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납부치 않으면 “갑”은 대가의 지급 시 계약 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갑”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4.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시행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갑”의 서면 통보를 받고도 15일 이상 경과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을”이 지급불능, 회사정리, 화의, 파산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및 분쟁)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갑”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해결키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4조(기술지원)

“을”은 계약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자문에 응하고 또한 “갑”이 필요로 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기술 지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 한다.

제15조(유지보수)

1. “을”은 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개발 완료 및 검수가 끝난 이후에도 2019년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2. “을”은 개발 완료 및 검수 이후에 “갑”의 추가적인 요청에 의해 실비가 발생할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

제16조(실시권의 설정)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결과물이 포함되는 ‘Time 녹화기능이 포함된 EMS HUB’에 대해 지역의 제한이 없는 통상 실시권을 계약 후 3년간 무상으로 허여 한다.
2. “을”이 본 실시권의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의사를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실시권은 확정적으로 종료한다.
3. 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4. “을”이 본 실시권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러한 개발발명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계약일 : 2018년 4월 5일

“갑”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회사명 : 서울대학교병원

단장 : 서창석 (인)

“을”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31 아세아빌딩 4층

회사명 : ㈜헬스허브

대표자 : 이병일 (인)